

조기재취업수당 안내(자영업)

1.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(24년 수급자격 신청자)

- ① 수급신청일 기준 14일이 지난 후,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(퇴사일기준 65세이상자는 6개월이상)사업 영위한 경우
- ② 해당수급기간 내에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업종의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함
- ③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의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/2이상 남아 있어야 함
예) 「120일의 경우 60일 이상」, 「180일의 경우 90일 이상」, 「240일의 경우 120일 이상」
- ④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⑤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가 아닐 것

2. 제출서류

-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③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④ 사업개시 후 과세증빙자료 (12개월간)

[1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. 세금계산서, 매출전표 등 월별 매출내역 자료]

- * 추가제출서류: 부가세 면세업종 -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법인대표 - 재무제표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
개인택시 및 화물영업차량 - 자동차 등록증 사본, 해당업종 면허증
보험모집인 - 위촉증명서, 최근 12개월 모집수당 증빙자료

** 기타 필요서류는 추후 요청 할 수 있음

- ※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서식은 대구고용센터 홈페이지 [정보마당] -> [서식 자료실] -> 조기재취업수당 검색 -> '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'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음

3. 청구방법

방문(대리인 가능), 등기우편, 인터넷(www.ei.go.kr - 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), 팩스접수 가능

[문의 ☎ : 053-667-6000, 팩스 : 053-720-4021]

4. 지급액 : 구직급여일액 × 잔여급여일수(재취업일~수급기간만료일) × 1/2

5. 청구시점 및 유의사항

- ① 사업영위 시작일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은 동일해야 함
- ② 사업 개시 후 12개월(만 65세이상자는 6개월) 이내 사업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
- ③ 청구시점 : 사업개시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
* 퇴사일 기준 만 65세이상 대상자는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
- ④ 처리기한 :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(실제 약 3주 소요)
- ⑤ 사전신청 대상 : 퇴사일 기준 만 65세이상 수급자중 6개월이상 계속 사업영위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,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 (다만, 6개월이상 계속 사업영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이후 신청이 가능)